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번호 2019-112호
청구인 ○○○
피청구인 □□학교장
재결일자 2019. 10. 14.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해학생에게 **쓰라는 별명을 부르면서 놀렸고, 점심시간에 어깨를 툭툭 쳤으며, 중학교 입학 후에는 한 두달에 2번정도 어깨를 툭툭

쳤고, 또한 쌀보리 게임을 하자면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피해학생에게는 잡기만 시켰다.

피청구인은 2019. 6월 말경 피해학생에 대한 다른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2019. 7.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7. 16.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6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 조치를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1. 절차위반의 점

피청구인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학폭위에 참석하였을 때 제대로 된 의견진술의 기회 및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나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말을 끊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간사가 학폭위에서 계속 발언하여 간사의 발언권 제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또한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에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이유부기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청구인이 다른 반이 된 피해학생과 복도에서 마주치자 반가운 마음에 “**쓰”라고 말하며 톡 지나가는 일을 2~4차례 하였으며, 이는 친한 친구들끼리 흔하게 하는 행동으로 당시 피해학생도 웃으며 받아주었기에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019. 3월경 청구인과 쌀보리 게임을 한 내용의 진술은 당시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겨서 공격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주먹을 잡지

못하여 청구인이 연속으로 4회 공격을 하게 된 것이며, 피해학생은 이 쌀보리 놀이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가 없다.

피해학생과 청구인은 반이 멀리 떨어져 있어 중학교 입학 후 각자의 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피해학생과 자주 만난 바가 없었기에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청구인은 입학초 3월에 ‘이름부르며 특특치기’를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번 정도 하였을 뿐이며, 이는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행위의 지속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는 불쾌감을 느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을 정도로 가해행위를 할 어떠한 고의가 없었다.

사건조사이후 자신의 행위로 피해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학생을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사안조사 전후로 피해학생은 청구인을 생일파티에 초대하는 등 화해하였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청구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청구인도 반성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선도 및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이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1. 절차위반의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제12쪽에서 사안조사를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

안한다면 수업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조사당시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조사한 것으로 학습권침해에 대해서는 2학기에 별도의 학습기회를 실시할 것을 담당교과 선생님에게 요청하였다.

학폭위 회의 당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교사가 간사로서 참석하여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질의 및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 회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처분통지서에 처분사유를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가해정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함(신체폭력, 장난)」이라고 기재하여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처분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절차위반사유는 없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점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여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가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학생과 상호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행위였으며, 피해학생이 폭행이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학폭위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육적 조치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가혹한 조

치라고 할 수 없고, 특히, 가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가해학생이 인정한 행위만을 가지고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의 진술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 절차위반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기에 살피건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학습시간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방학을 앞두고 학사일정에 맞추고 또한 여러 명의 당사자들을 분리해 수차례 조사하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학폭위에 참석하였을 때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행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간사의 발언권 제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학폭위 참석자 및 청구인측 인적구성, 회의참석자들의 발언내용, 발언순서, 발언태도 등을 볼 때 강압적이거나 간사의 발언으로 인해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학폭위 조치결과 통지에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이유부기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일시, 장소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사유를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가해정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함(신체폭력, 장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신체폭력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는 기재되었으며, 학폭위에 청구인의 친권자가 참석하여 청구인이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유부기가 부족하여 처분이 위법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학생을 중학교 진학한 후 복도에서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학교폭력의 고의 없이 장난으로 어깨를 툭툭 쳤을 뿐 학교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진술서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당한 각각의 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도 “일주일에 1번정도 와서

세게 때렸다. 복도에서뿐만 아니라 교실까지 찾아와 폭행했다.” 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2차례의 조사과정에서 처분기재와 같이 “한두 달에 2번 정도 어깨를 툭툭 쳤다.” 고 자백한 바 있다.

청구인은 “**쓰”라는 호칭은 별명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조금 늘려 부르는 애칭으로서 그러한 호칭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우선 “**쓰”라는 호칭처럼 이름 뒤에 “쓰”라는 표현을 넣어 부르는 것은 별명이라기보다는 단지 이름을 늘려 부르는 것으로 흔히 친구들 간에 애칭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은 “6학년 때에는 별명으로 놀렸고(**쓰)”라고 기재하여 별명이 놀림의 의도에서 불리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다른 가해학생들의 경우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호칭을 불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동기생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별명을 부른 것은 학교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쌀보리게임에 대하여도 게임규칙상 가위바위보를 하여 공격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가위바위보를 이겨 공격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먹으로 손바닥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보리보리쌀을 피해학생에게만 잡게 시킨 뒤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쌀보리게임이 가위바위보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에게만 보리를 잡게 시킨 뒤에 청구인은 손바닥공격을 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가해학생조치별 적용기준을 판정하면서, 이 사건 경위와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정도는 1점, 화해정도도 0점으로 각 판정하여 총 5

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 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I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